



거창군
Geochang County

공보는 공문서로서 효력을 갖는다.

공 보

제738호 2020. 2. 19.(수)



선	기관의 장
결	

훈 령

- 제436호 거창군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 …… 3
- 제437호 거창군청 부설주차장 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 …………… 12

고 시

- 제2020-21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개간) 시행계획(변경) 승인 고시 …………… 18
- 제2020-22호 거창군계획시설(교통시설 소로2-196호선, 주차장) 사업 실시계획 인가고시 … 19
- 제2020-23호 도로명주소 고시 …………… 21

공 고

- 제2020-263호 정장공원 편입토지 보상계획 열람공고 …………… 23
- 제2020-274호 「거창군 군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30
- 제2020-275호 「거창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38
- 제2020-286호 국도24호선 거창 산포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 …………… 49

제2020-287호 공인등록공고	57
제2020-294호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58
제2020-295호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	86
제2020-300호 「2020년 친환경 쌀 학교급식 지원사업」 친환경 쌀 공급업체 선정 공모	92

회 람									
-----	--	--	--	--	--	--	--	--	--

발 행 : 거창군

편 집 : 기획예산담당관 (055-940-3043, 행정 3043)

※ 거창군 공보는 거창군 홈페이지(<http://www.geochang.go.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거창군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거창군수

서명생략

2020년 2월 19일

거창군 훈령 제436호

거창군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

거창군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제4호 및 제3조 중 “「행정감사규정」”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으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적극행정 면책요건) ① 이 규정에 따라 적극행정 과정에서 공무원 등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의무를 다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면책처리 한다.

1.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의 업무 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2.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이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
3.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② 제1항제3호의 요건을 적용하는 경우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1. 감사를 받는 사람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2.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을 것

제7조제2항 중 “기획삼사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제8조 중 “피감사기관”을 “감사대상기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2항 중 “피감사자”를 “감사대상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피감사기관”을 “감사대상기관”으로 하면 같은 조 제4항 단서를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p>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2. (생략)</p> <p>3. “면책”이란 「<u>행정감사규정</u>」에 따른 감사결과 적극행정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상 하자 또는 현실과 부합되지 아니한 모든 규정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위반사항 등과 관련하여 그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징계 등 불이익한 처분 및 처분요구(이하 “처분”이라 한다) 등을 하지 않거나 감경하는 것을 말한다.</p> <p>4. “불이익한 처분 등”이란 「<u>행정감사규정</u>」, 「<u>행정안전부행정감사규칙</u>」 및 「<u>거창군 자체감사규칙</u>」에 따른 징계 등의 처분을 말한다.</p> <p>5. (생략)</p> <p>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지방자치법」, 「<u>행정감사규정</u>」 및 「<u>거창군 자체감사규칙</u>」에 따라 군수가 실시하는 자체감사·조사 및 감찰(이하 “감사”라 한다)업무 전반에 걸쳐 적용한다.</p> <p>제5조(적극행정 면책요건) 이 규정에 따른 적극행정 과정에서 공무원 등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의무를 다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면책처리 한다.</p> <p>1. 공익성 : 업무처리의 목적이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 증진을 위한 경우로서 관련 공무원 등의 개인적인 이익 취득이나 특정인에 대한 특혜 부여 등의 비위가 없을 것</p>	<p>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2. (현행과 같음)</p> <p>3. “면책”이란 「<u>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u>」에 따른 감사결과 적극행정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상 하자 또는 현실과 부합되지 아니한 모든 규정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위반사항 등과 관련하여 그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징계 등 불이익한 처분 및 처분요구(이하 “처분”이라 한다) 등을 하지 않거나 감경하는 것을 말한다.</p> <p>4. “불이익한 처분 등”이란 「<u>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u>」, 「<u>행정안전부행정감사규칙</u>」 및 「<u>거창군 자체감사규칙</u>」에 따른 징계 등의 처분을 말한다.</p> <p>5. (현행과 같음)</p> <p>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지방자치법」, 「<u>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u>」 및 「<u>거창군 자체감사규칙</u>」에 따라 군수가 실시하는 자체감사·조사 및 감찰(이하 “감사”라 한다)업무 전반에 걸쳐 적용한다.</p> <p>제5조(적극행정 면책요건) ① 이 규정에 따라 적극행정 과정에서 공무원 등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의무를 다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면책처리 한다.</p> <p>1.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의 업무 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p> <p>2.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이 대상 업</p>

2. 타당성 : 법령상의 의무이행, 정부 정책의 수립이나 집행, 국민 편의 증진 등을 위해 제반 여건에 비추어 해당업무를 추진·처리해야 할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을 것

3. 투명성 : 의사결정의 목적·내용 및 그 과정 등을 관련 문서에 충실히 기재하여 합당한 결재를 받는 등 업무를 투명하게 처리하였을 것(다만, 일반적인 절차에 따른 업무처리로는 국가안위 및 공공 이익 증진 등의 행정목적 달성이 명백하게 곤란할 정도의 시급성·불가피성 등이 있는 경우에는 투명성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 가능)

제7조(면책심사위원회 설치)

- ① (생략)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행정과장, 복지정책과장, 심의안전관련업무 부서장으로 한다.
- ③ (생략)

제8조(면책제도 안내) 감사주관 책임자는 감사 중 또는 감사 종료 시에 피감사기관의 장(부서장)에게 면책제도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안내한다.

제9조(면책심사 신청) ① 감사자 또는 감사주관 책임자는 감사결과 피감사자에 대하여 면책조치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해당 위원회에 면책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피감사자가 면책심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감사주관 책임자의 의견을 붙여 군수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③ 피감사기관의 장(부서장)은 감사를 받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특별히 면책

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
3.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② 제1항제3호의 요건을 적용하는 경우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 1. 감사를 받는 사람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 2.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을 것

제7조(면책심사위원회 설치)

- ① (현행과 같음)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기획예산담당관, 행정과장, 복지정책과장, 심의안전관련업무 부서장으로 한다.
- ③ (현행과 같음)

제8조(면책제도 안내) 감사주관 책임자는 감사 중 또는 감사 종료 시에 감사대상기관의 장(부서장)에게 면책제도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안내한다.

제9조(면책심사 신청) ① 감사자 또는 감사주관 책임자는 감사결과 감사대상자에 대하여 면책조치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해당 위원회에 면책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감사대상자가 면책심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감사주관 책임자의 의견을 붙여 군수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③ 감사대상기관의 장(부서장)은 감사를 받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특별히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증명자료를 갖춰 군수에게 면책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면책심사 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해당 감사결과의 처분지시(징계의결요구)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가 종료된 날부터 20일을 경과한 때에는 신청할 수 없다.

면책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증명자료를 갖춰 군수에게 면책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면책심사 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해당 감사결과의 처분지시(징계의결요구)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

면책심사신청 안내

거창군 주관 ○○○감사를 받은 공무원이 감사 중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면책심사를 신청하려는 때에는 다음 요령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권자

가. 감사를 받은 공무원 본인(감사주관 책임자 의견 첨부할 것)

나. 감사를 받은 기관의 장(부서장)

2. 신청기간: 감사결과 처분 이전(단, ~~감사종료일~~부터 20일 이내)

3. 적극행정 면책요건

가.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의 업무 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 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나.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이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

다.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다만,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다음 1), 2)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1) 감사를 받는 사람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2)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을 것

4. 면책 제외대상

가. 금품을 수수한 경우

나. 고의·중과실, 무사안일 및 직무태만의 경우

다. 자의적인 법 해석 및 집행으로 법령의 본질적인 사항을 위반한 경우

라. 위법·부당한 민원 수용 등 특혜성 업무처리를 한 경우

마. 그 밖에 위 각 목에 준하는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

면책심사 신청서

「거창군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면책심사를 신청합니다.

신 청 인						
심 사 대 상 자						
감 사 명		감 연 월	사 일		감 사 자	
감 사 지적사항						
면책 심사 신청 사유	<u>공익성1.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개선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여부</u>		(해당여부, 첨부서류)			
	<u>타당성2.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인지 여부</u>		(해당여부, 첨부서류)			
	<u>투명성3.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u>	<u>가.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과 대상 업무 간에 사적인 이해 관계가 없을 것</u>		(해당여부, 첨부서류)		
		<u>나. 대상 업무를 처리 하면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었을 것</u>		(해당여부, 첨부서류)		
소속기관의 장 또는 감사주관 책임자 의견						
	기관장(또는 감사주관 책임자) 확인				(인)	

필요시 관련 증명서류 및 의견서 붙임

[별지 제3호서식]

면책심사 조서

감 사 기 관 명		감사 연월일	
건 명			
신 청 인			
심 사 대 상 자			
정 계 양 정 (안)			
감 사 지 적 사 항			
면 책 기 준	<u>검토의견</u>		
1. <u>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개선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여부</u>			
2. <u>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인지 여부</u>			
3. <u>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u>			
가. <u>자체감사를 받는 사람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u>			
나. <u>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었을 것</u>			
<u>감사부서(감사자) 종합의견</u>			

I 개정 이유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적극행정 면책기준 개정 사항 반영
- 용어 명확화, 직제개편 사항 현행화, 한자어 순화 등

II 주요 내용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3 적극행정 면책요건 완화 개정
사항 반영 : 제5조(적극행정 면책요건), 제9조(면책심사 신청)
- 근거규정 명확화 · 직제개편 사항 현실화 · 한자어 순화 등

거창군청 부설주차장 관리규정 일부개정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거창군수

서명생략

2020년 2월 19일

거창군 훈령 제437호

거창군청 부설주차장 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

거창군청 부설주차장 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주차요금) 주차장 주차요금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5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관용차량 및 공무수행을 위한 차량
3. 군청사 내 행사 및 회의 등에 참석한 자동차(다만, 주차장관리부서에 협조 요청한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차량

제8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9항까지를 제3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5항(기존 제6항) 중 “당일”을 “그날”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관리자는 주차관제시스템에서 주차시간을 자동 인식하는 방법으로 제4조에 따라 계산한 요금을 주차장을 이용하는 자에게 징수한다.
- ② 정기차량 등록은 공무원 등이 실제 운행하고 있는 차량으로 1대를 초

과하여 등록할 수 없으며, 관리자는 신청인의 차량번호를 주차관제시스템에 입력하여 별도의 주차권 발급없이 정기차량을 관리한다.

제14조 중 “신고하고, 원상 복구 또는 피해보상을 하여야 한다.”를 “신고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p>제4조(주차요금) 주차요금은 다음과 같다</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 style="width: 5%;">구분</th> <th style="width: 20%;">1회 주차요금</th> <th style="width: 10%;">1일 주차요금</th> <th style="width: 10%;">월 주차요금</th> <th style="width: 55%;">비고</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 style="writing-mode: vertical-rl; text-orientation: upright;">일반차량</td> <td>최초 30분까지</td> <td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td> <td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td> <td rowspan="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분 까지 : 무료 ◦ 31~40 : 500원 ◦ 41~50 : 700원 ◦ 51~60 : 900원 <li style="text-align: center;">⋮ <li style="text-align: center;">⋮ </td> </tr> <tr> <td>무료</td> <td>500원 ※ 30분 초과 매10분마다 200원 추가</td> </tr> <tr> <td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직 원 차 량</td> <td style="text-align: center;">2,000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30,000원</td> <td>주차장 이용횟수와는 무관함</td> </tr> </tbody> </table> <p>제5조(주차요금 면제) 군수는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차장에 입차한 후 30분 이내에 출차하는 차량(다만, 민원업무의 경우 1시간 이내) 2. 관용차량, 언론기관 소속 취재용 차량 3. 읍면사업소 직원의 공무수행 차량 4.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차량 <p>제8조(주차요금 징수방법) ① 주차요금의 징수는 주차권 교부와 주차카드를 발행하는 방법으로 한다</p> <p>② 주차권 교부는 차량 입차시 이용자가 주차권을 직접 뽑아 입차하고,</p>	구분	1회 주차요금	1일 주차요금	월 주차요금	비고	일반차량	최초 30분까지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분 까지 : 무료 ◦ 31~40 : 500원 ◦ 41~50 : 700원 ◦ 51~60 : 900원 <li style="text-align: center;">⋮ <li style="text-align: center;">⋮ 	무료	500원 ※ 30분 초과 매10분마다 200원 추가	직 원 차 량		2,000원	30,000원	주차장 이용횟수와는 무관함	<p>제4조(주차요금) 주차장 주차요금 기준은 별표와 같다.</p> <p>제5조(주차요금 면제) 군수는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차장에 입차한 후 30분 이내에 출차하는 차량(다만, 민원업무의 경우 1시간 이내) 2. 관용차량 및 공무수행을 위한 차량 3. 군청사 내 행사 및 회의 등에 참석한 자동차(다만, 주차장관리부서에 협조 요청한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차량 <p>제8조(주차요금 징수방법) ① 관리자는 주차관제시스템에서 주차시간을 자동 인식하는 방법으로 제4조에 따라 계산한 요금을 주차장을 이용하는 자에게 징수한다.</p> <p>② 정기차량 등록은 공무원 등이 실제 운행하고 있는 차량으로 1대를 초</p>
구분	1회 주차요금	1일 주차요금	월 주차요금	비고														
일반차량	최초 30분까지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분 까지 : 무료 ◦ 31~40 : 500원 ◦ 41~50 : 700원 ◦ 51~60 : 900원 <li style="text-align: center;">⋮ <li style="text-align: center;">⋮ 														
	무료				500원 ※ 30분 초과 매10분마다 200원 추가													
직 원 차 량		2,000원	30,000원	주차장 이용횟수와는 무관함														

~~출차시 주차권을 관리자에게 제시하면 주차요금 징수와 동시에 영수증을 발행하고 출차 시킨다.~~

~~③ 주차권을 분실하였거나 훼손하여 주차시간 및 요금을 산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당일 주차장 운영의 시작시간부터 출차시간까지의 주차요금을 징수한다.~~

~~④~⑤ (생략)~~

~~⑥ 주차장 운영시간 외 입차하여 운영시간 중 출차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당일** 08:00부터 주차시간을 산정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한다.~~

~~⑦~⑨ (생략)~~

제14조(손해배상책임) 주차장내에서 시설물 또는 다른 차량 등에 재산상의 해를 입히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가해자는 관리자에게 즉시 신고하고, 원상 복구 또는 피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15조(관련 조례의 준용)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주차장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과하여 등록할 수 없으며, 관리자는 신청인의 차량번호를 주차관제시스템에 입력하여 별도의 주차권 발급없이 정기차량을 관리한다.

<삭제>

~~③~④ (현행 제4항·제5항과 같음)~~

~~⑤ 주차장 운영시간 외 입차하여 운영시간 중 출차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그날** 08:00부터 주차시간을 산정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한다.~~

~~⑥~⑧ (현행 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과 같음)~~

제14조(손해배상책임) 주차장내에서 시설물 또는 다른 차량 등에 재산상의 해를 입히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가해자는 관리자에게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삭제>

[별표]

주차장 주차요금 기준

주 차 요 금				
일반차량			직원차량	
최초 30분 이하	30분 초과부터 40분 이하까지	40분 초과 시부터 10분 마다	하루	한 달
무료	500원	200원	2,000원	30,000원
		10분 미만은 10분으로 한다.		

I 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주차편의 제공」 실태 점검에 따른 일부 미비점 개선
- 주차장 징수요금 방법 개선에 따른 관리규정 보완

II 주요내용

- 특혜성 소지가 있는 언론취재 차량에 대한 면제 규정 삭제(안 제5조)
- 주차요금 징수방법을 현 실정에 맞게 규정(안 제8조)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개간) 시행계획(변경) 승인 고시

「농어촌정비법」 제9조제9항의 규정에 의거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개간) 시행계획 (변경)승인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사업목적 : 농지조성 전작물(소과류 아로니아) 재배
2. 사업내역

위 치	사업시행면적(m ²)			사업비	사업 예정기간	사업시행자		
	구분	지 적	개간 승인면적			주 소	성 명	
계			8,210m ²					
거창군 거창읍 장팔리	산316-1 산316-9	당초 변경 당초 변경	6,714m ² 6,714m ² 6,940m ² 6,940m ²	4,691m ² 4,691m ² 3,519m ² 3,519m ²	당초 : 195,800천원 변경 : 198,000천원	당초 : 2018. 1. 30. ~ 2020. 1. 31 변경 : 2018. 1. 30 ~ 2021. 1. 31	경남 거창군 거창읍 김천1길 606	권 영 *

3. 사업효과 : 국토의 효율적 이용 (농지조성)
4. 열람장소 : 거창군청 건설과 농업기반담당 ☎ 055-940-3542】

2020년 2월 18일

거창군수

거창군 고시 제2020 - 22호

거창군계획시설(교통시설:소로2-196호선, 주차장) 사업 실시계획 인가고시

경상남도 고시 제103호(1995.05.12.)로 최초 결정된 군계획시설(교통시설:소로 2-196호선, 주차장)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 인가 고시합니다.

2020. 02. 13.

거 창 군 수

1. 사업시행 개요

종류	명 칭	위 치		시 행 규 모					시 행 구 간	최 초 결정일	비고	
		읍	리	구분	류별	번호	연장 (m)	폭 (m)				면적 (㎡)
도시 계획 시설	도시계획도로 (소로2-196호선)	가조	수월	소로	2	196	88.5	8		가조면 수월리 449-11 ~	경고 제103호 (1995.05.12.)	
	주차장	가조	마상						2,065	가조면 마상리 9-2		

2. 사업 시행자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수

3.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착수 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
- 준공 예정일 : 착공일로부터 6개월

4.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1) 교통시설(주차장)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주 소	성명	권리명	권리자	
합계	가조면			2,065	2,065					
1	수월리	446 - 8	답	17	17		거창군			
2	수월리	446 - 7	답	8	8		거창군			
3	수월리	446 - 10	답	387	387		거창군			
4	수월리	446 - 3	답	907	907		거창군			
5	수월리	449 - 11	답	746	746		거창군			

2) 도로(소로2-196호선)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주 소	성명	권리명	권리자	
합계	가조면			1,760	750					
1	수월리	449 - 10	답	296	296		거창군			
2	마상리	861 - 28	도	1,039	29		국 (국토교통부)			
3	마상리	9 - 2	답	425	425		거창군			

5.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 2. 19.
거창군수

- 부여한 도로명주소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강남로1길 20 등 8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폐지)사유	비고
(별 도 열 람)				

○ 도로명주소 사용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과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는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8조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따라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 이름,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 고시내용과 기타 사항은 거창군청 민원소통과(☎055-940-3312)에 문의하시거나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부여

일련 번호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고 시 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도로명	도로명주소		
1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장기리 291-5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가북로 13	20091228	20200219	가북으로 가는길로 불려진 것에서 유래	
2	경상남도 거창군 가북면 중촌리 1683-1	경상남도 거창군 가북면 고비길 128-14	20090401	20200219	학이 높이 날면서 놀았다하여 이름 지어진 자연마을 이름 반영	
3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346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교촌길 99-21	20090401	20200219	교촌이라는 자연마을 이름 반영	
4	경상남도 거창군 고제면 봉계리 230-1	경상남도 거창군 고제면 내당길 69-50	20090401	20200219	내당이라는 자연마을 이름이 반영된 도로	
5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산수리 1137-1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산수길 13-363	20090401	20200219	산수 경치가 좋아서 이름 붙여진 자연마을 이름 반영	
6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장기리 528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신천길 34	20090401	20200219	신천이라는 자연마을 이름이 반영된 도로	
7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무촌리 1385, 산45-3, 산50-1, 1370-10, 1385-2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지하동1길 149-33	20091228	20200219	마을 터가 못 위에 뜬 연꽃과 같다하여 붙여진 자연마을 이름이 반영된 첫번째 도로	
8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송정2길 34-25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강남로1길 20	20090401	20200219	강남로의 시작점에서 부터 첫번째로 분기되는 도로	

정장공원 편입토지 보상계획 열람공고

건설부 고시 제2113호(1965.12.31.), 거창군 고시 제2017-162호(2017.12.21.)로 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된 거창군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정장공원)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보상법) 제9조,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출입을 공고하고, 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보상조서를 열람하시고 조서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내 이의신청하여 주시고 보상협의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2월 14일

거창군수

1. 사업개요

- 가. 사업명 : 정장공원 조성사업
- 나. 위치 : 거창군 거창읍 대평리 800-30번지 일원
- 다. 사업내용 : 공원 80,290㎡(추후 변동될 수 있음, 기조성 53,590㎡)
- 라. 사업인정 : 사업인정 전 협의매수
- 마. 사업시행자 : 거창군수

2. 토지출입내용

- 가. 출입사유 : 토지 및 물건 조사, 측량, 감정평가 등
- 나. 출입토지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대평리 800-30 외 62필지
- 다. 출입기간 : 2020. 2. 14. ~ 사업 종료 시까지

3. 보상대상 및 열람내용

- 가. 보상대상 : 붙임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 나. 토지 및 물건조서의 세부내용은 개별통지하며(미등기 물건의 소유자, 점유자 및 관계인에 대한 통지는 본 공고로 갈음), 동 조서를 열람기간 동안 열람장소에 비치하며 열람합니다.
- 다. 거창군 홈페이지 www.geochang.go.kr(입법/공고/고시)에서도 확인가능합니다.
※ 자세한 보상일시, 장소, 보상내역, 보상금액, 구비서류 등은 추후 개별통지

4. 열람 및 이의신청

가. 기 간 : 2020. 2. 14. ~ 2. 29.

나. 열람장소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청 산림과(3층)

【☎ 055-940-3482, FAX 055-940-3459】

다. 이의신청 및 방법 : 열람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보상계획 안내문에 첨부된 이의신청서에 내용을 기재하여 열람기간 내 서면 또는 팩스전송, 우편으로 제출

5. 보상협의 및 지급시기 : 보상계획 공고 및 감정평가 후 개별통지 예정

6. 보상방법 및 절차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우리군과 토지 등 소유자가 협의하여 계약을 체결함.

나. 보상장소, 보상금액, 구비서류 등 보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보상시기에 맞춰 개인별로 통지 예정임.

7. 감정평가업자 선정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거창군이 선정하는 감정평가업자 이외에 토지소유자 및 경상남도지사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각 1인을 추천할 수 있음.

나. 토지소유자는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할 수 있음.

8. 기타사항

가. 보상조서 물건내역은 추후 분할측량 및 계획변경, 재조정, 기타 사유 등으로 인해 변경 또는 제외될 수 있음.

나. 상기 내용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의함.

다. 본 공고와 별도로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개별통지 할 예정이나 주소나 거소불명 등으로 인하여 개별통지가 되지 못한 분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대신합니다.

정장공원 편입토지조서

번호	지번		지목	지적면적(m ²)		편입면적(m ²)		지분			관계인		비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성명	주소	
1	대평리 800-30		전	360		360		330	/	360	한*권	서울특별시 노원구 마들로	
								30	/	360	거*군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2	대평리 800-31		전	47		47		20	/	47	거*군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27	/	47	백*순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대평8길	
3	대평리 818-3		전	631		244					한*연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비슬로	부분 면적오류
4	대평리 818-5	대평리 818-14	전	529	306	205	306				한*연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비슬로	
5	대평리 818-6	대평리 818-15	전	1,626	381	292	381				한*연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비슬로	
6	대평리 818-11	대평리 818-16	전	401	2	2	2				박*술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대평9길	
7	대평리 1365-4	대평리 1365-65	답	1,762	59	77	59				이*둘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장팔길	
8	대평리 1365-12	대평리 1365-66	답	2,631	7	63	7				백*갑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상동7길	
		대평리 1365-67			57		57						
9	대평리 1365-14	대평리 1365-14	답	469	98	102	98				김*태	대구광역시 달서구 와룡로53길	
10	대평리 1365-15	대평리 1365-69	답	1,838	106	119	106				김*태	대구광역시 달서구 와룡로53길	
11	대평리 1365-16	대평리 1365-70	답	645	2	5	2				신*구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기업단지로	
12	대평리 1378-2		전	443		55					신*수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강변로8길	부분 지적오류
13	대평리 1378-59	대평리 1378-116	전	708	333	324	333				하*선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동동6길	
14	대평리 1378-62		전	381		40		143	/	381	거*군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부분
								238	/	381	이*영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송정2길	
15	대평리 1378-64		전	486		486					유*오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정장길	
16	대평리 1378-65		전	292		292					박*기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창남3길	
17	대평리 1422-10		묘	188		188					거창***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리	

18	대평리 1422-11		묘	1,187		695					거창***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리	부분 지적오류
19	대평리 1422-15		전	1,697		591					거창***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리	부분 지적오류
20	대평리 1422-16		전	603		603					거창***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리	지적오류
21	대평리 1422-43		전	3,528		3,528					거창***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리	
22	대평리 산1-1		임	393		393					평성***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대평리	
23	대평리 산1-2		임	215		215					평성***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대평리	
24	대평리 산1-8		임	251		251					평성***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대평리	
25	대평리 산3		임	496		496					고척합 천****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고척길	
26	대평리 산8-5		임	3,273		622					한*아	대구광역시 수성구 들안로60길	부분 면적오류
27	대평리 산9-1		임	1,785		1,785					이*재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거창대로	
28	대평리 산10-1		임	694		336	1	/	2	하*우	경상남도 김해시 장유로	부분 지적오류	
							1	/	2	성*열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시장길		
29	대평리 산11-1		임	694		694					거창***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리	
30	대평리 산11-4		임	1,488		1,488					주*수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구암북18길	
31	대평리 산13-11		임	1,983		896	1	/	2	성*철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촌2길	부분 지적오류	
							1	/	2	성*열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시장길		
32	정장리 412-2		전	350		350					정*모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거함대로	
33	정장리 412-3		임	83		83					정*모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거함대로	
34	정장리 413-1		전	379		379					장*영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김포대로2270번길	
35	정장리 413-2		제	264		264					장*영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김포대로2270번길	
36	정장리 413-3		임	69		69					장*영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김포대로2270번길	
37	정장리 414-1		전	598		598					정*모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거함대로	
38	정장리 414-2		임	208		208					정*모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거함대로	

39	정장리 415		전	734		734				정*기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국농소2길	
40	정장리 416	정장리 416-2	답	519	487	519	487			정*모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거함대로	
41	정장리 417-1		임	251		251				정*창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공수들8길	미등기 면적오류
42	정장리 418-1		천	337		337				이*기		미등기
43	정장리 419-1	정장리 419-5	천	151	119	112	119			정*창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공수들8길	미등기
44	정장리 423-1	정장리 423-4	전	355	234	228	234			정*모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거함대로	
45	정장리 425		답	675		675				이*오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김천2길	
46	정장리 426		전	288		288				이*오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김천2길	
47	정장리 427		답	1,349		1,349				전*정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정장2길	
48	정장리 819	정장리 819-17	천	181	28	120	28			장*하		미등기
49	정장리 869		답	1,526		1,526				정*철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거열로7길	
50	정장리 870		전	1,098		1,098				마*임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정장1길	
51	정장리 871		전	397		397				이*오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김천2길	
52	정장리 872		전	86		86				마*임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정장1길	
53	정장리 873		전	999		999				이*오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김천2길	
54	정장리 917-7	정장리 917-26	과	1,831	710	371	710			박*상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정장1길	
55	정장리 917-11	정장리 917-27	과	869	846	329	846			박*상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정장1길	
56	정장리 917-13		과	595		595				박*상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정장1길	
57	정장리 917-14		과	5,424		5,424				거창***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리	
58	정장리 산2		임	5,375		2,163				거창유 씨*****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상동2길	부분 지적오류
59	정장리 산2-2		임	186		10				거창유 씨*****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상동2길	미등기

60	정장리 산8-3		임	2,975		899		2,909	/	2,975	유*열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정장2길	부분 면적오류
								66	/	2,975	유*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성로61번길	
61	정장리 산9		임	198		198					박*준	경남 거창군 거창읍 정장리	미등기
62	정장리 산10-2		임	1,089		234					유*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새로	부분 지적오류
63	정장리 산11-1		임	1,686		285					거창유 씨*****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상동2길	부분 면적오류

거창군 공고 제2020 - 274호

「거창군 군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거창군 군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4일

거 창 군 수

1. 자치법규명 : 「거창군 군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2.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 시행에 따라 조례 시행에 필요한 서식을 정함

3.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신청 및 지정 절차에 따른 관련 서식을 신설함 (안 제9조의2)

4. 의견제출

가.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0년 3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2)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3) 그 밖에 참고사항 등

다. 주소 : (우50132)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청(재무과)

라. 전화)055-940-3231, 팩스)055-940-3219, 이메일)ekpark9216@korea.kr

붙임 「거창군 군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 조 례 명 : 거창군 군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건	비 고

거창군 군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거창군 군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9조의2(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신청·결과통지 등) ① 조례 제4조의3 제2항에 따른 거창군 선정 대리인 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② 조례 제4조의3제4항에 따른 거창군 선정 대리인 신청 결과 통지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③ 조례 제4조의3제6항에 따른 거창군 선정 대리인 신청 지정 사건의 기록 관리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12호서식부터 별지 제14호서식까지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u>제9조의2(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신청·결과통지 등) ① 조례 제4조의3 제2항에 따른 거창군 선정 대리인 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u></p> <p><u>② 조례 제4조의3제4항에 따른 거창군 선정 대리인 신청 결과 통지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u></p> <p><u>③ 조례 제4조의3제6항에 따른 거창군 선정 대리인 신청 지정 사건의 기록·관리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u></p>

거창군 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청구인)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접수번호			
처분내용	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과세처분인 경우에는 연도, 기분, 세목 및 세액 등을 기재합니다)		
	연도	기분	세목
			부과액

본인은 위 접수 건과 관련하여 대리인 선정 신청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함을 확인합니다.

1. 청구·신청인(배우자 포함)의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이고, 소유 재산의 가액이 5억원 이하일 것
2. 법인이 아니고 법 제93조에 따른 대리인이 없을 것
3. 「지방세징수법」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자가 아닐 것
4.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의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일 것
5.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및 레저세가 아닌 세목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일 것

「지방세기본법」 제9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거창군 선정 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하며, 신청인의 위 신청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청구인) (서명 또는 인)

거창군수 귀하

신청(신고)인 제출서류	1. 소득금액증명(본인 및 배우자의 종합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세무서장이 확인발급하는 서류) 다만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2. 가족관계증명서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지방세징수법」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자 2. 소유 재산(배우자의 소유 재산 포함)의 가액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거 창 군

거창군 선정 대리인 신청 결과 통지

① 신청인 용

○ 신청인: ○○○ 귀하

1. 거창군 선정 대리인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귀하가 '00.00.00. 제출한 「거창군 선정 대리인 선정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귀하는 (재산·소득요건 미충족)의 사유로 거창군 선정 대리인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2. 거창군 선정 대리인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귀하가 '00.00.00. 제출한 「거창군 선정 대리인 선정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귀하의 신청내용이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거창군 선정 대리인을 지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거창군 선정 대리인

성 명		자 격	
사 무 실			
연 락 처	(전화)		, (휴대폰)

2)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과 ○○○(☎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지정 내역을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② 선정대리인 용

○ 거창군 선정 대리인: ○○○ 귀하

신청인 ○○○님이 '00.00.00. 제출한 「거창군 선정 대리인 선정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신청내용이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귀하를 거창군 선정 대리인으로 지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지정 접수건(지정사건)

신 청 인(청구인)		접수(사건)번호	
과세기간·세목·청구세액		연 락 처	
주 소			

2)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과 ○○○(☎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지정 내역을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년 월 일

거 창 군 수 관인생략

거창군 선정 대리인 지정사건 명세

번호	청구 일자	사건번호	납세자	청구 세액	신청일	지정일	선정대리인	결정 내용	인용 금액

* 결정내용 : 인용(직권취소에 따른 각하, 재조사 포함), 기각, 각하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시행 2019. 12. 25] [법률 제16057호, 2018. 12. 24, 타법개정]

제23조(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거창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거창군 군세 기본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4일

거 창 군 수

1. 자치법규명 : 「거창군 군세 기본 조례」

2. 개정이유

「지방세기본법」 개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 시 지방자치단체가 무보수 대리인을 선정하여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영세한 납세자에 대한 권익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재산의 평가방법 신설(안 제4조의2)

- 1) 「지방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함

나.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설(안 제4조의3)

- 1) 세액 1천만원 이하인 이의신청등 접수 시 선정대리인 제도 안내
- 2) 대리인 선정 신청(군수) → 선정대리인 지정 요청(도지사) → 지정 통보(군수) → 신청결과 통지

다. 선정대리인 의무·우대 규정 신설(안 제4조의4)

- 1) 선정대리인 활동 우수자에 대하여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우대
- 2) 실비변상적 수당 지급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0년 3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2)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3) 그 밖에 참고사항 등

다. 주소 : (우50132)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청(재무과)

라. 전화)055-940-3231, 팩스)055-940-3219, 이메일)ekpark9216@korea.kr

붙 임 「거창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 조 례 명 : 거창군 군세 기본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건	비 고

거창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부터 제4조의4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영 제62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의 소유 재산 평가는 「지방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다.

제4조의3(선정대리인 신청·통지 등) ① 군수는 대리인 없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이하 “이의신청등”이라 한다)이 접수된 경우 그 청구등 세액이 법 제93조의2 제1항제4호에 해당하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이의신청인등”이라 한다)에게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이하 “선정대리인”이라 한다) 제도를 안내하여야 한다.

②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선정대리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체 없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선정대리인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도지사가 선정대리인을 지정·통보하면 법 제93조의2제2항에 따른 선정대리인 신청 결과를 규칙에서 정한 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해당 이의신청등과 관련된 서류를 지체없이 선정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 또는 신청일자, 불복청구인, 대리인 지정일자, 결정내용 등을 규칙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의4(선정대리인의 의무·우대 등) ① 선정대리인은 임기가 종료하더라도 임기만료 전에 지정된 사건에 대한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② 선정대리인은 이의신청등 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군수는 선정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변호사법」 제90조 및 제91조에 따른 징계처분 또는 「세무사법」 제12조 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④ 군수는 선정대리인이 지식기부를 통해 이의신청등 업무를 대리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선정대리인에게 실비변상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u>제4조의2(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영 제62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의 소유 재산 평가는 「지방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다.</u></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u>제4조의3(선정대리인 신청·통지 등)</u></p> <p>① <u>군수는 대리인 없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이하 “이의신청등”이라 한다)이 접수된 경우 그 청구등 세액이 법 제93조의2제1항제4호에 해당하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이의신청인등”이라 한다)에게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이하 “선정대리인”이라 한다) 제도를 안내하여야 한다.</u></p> <p>② <u>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선정대리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u></p> <p>③ <u>군수는 제2항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체 없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선정대리인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u></p> <p>④ <u>군수는 도지사가 선정대리인을 지정·통보하면 법 제93조의2제2항에 따른 선정대리인 신청 결과를 규칙에서 정한 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u></p> <p>⑤ <u>군수는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해당 이의신청등과 관련된 서류를 지체 없이 선정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u></p>

⑥ 군수는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 또는 신청일자, 불복청구인, 대리인 지정일자, 결정내용 등을 규칙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신 설>

제4조의4(선정대리인의 의무·우대 등)

① 선정대리인은 임기가 종료하더라도 임기만료 전에 지정된 사건에 대한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② 선정대리인은 이의신청등 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군수는 선정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변호사법」 제90조 및 제91조에 따른 징계처분 또는 「세무사법」 제12조 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④ 군수는 선정대리인이 지식기부를 통해 이의신청등 업무를 대리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선정대리인에게 실비변상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관련법령

□ 「지방세기본법」

[시행 2020. 3. 2] [법률 제16854호, 2019. 12. 31, 일부개정]

제89조(청구대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12. 31.>

1.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제121조제1항에 따른 통고처분
3.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4.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에 대한 처분
5. 이 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제90조(이의신청) 이의신청을 하려면 그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적어 특별시세·광역시세·도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특별자치시세·특별자치도세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에게, 시·군·구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91조(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①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의 결정에 대해서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장·군수·구청장의 결정에 대해서는 시·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한다.

② 제96조에 따른 결정기간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결정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③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특별시세·광역시세·도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

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 및 특별자치시세·특별자치도세의 경우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군·구세 [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제92조(관계 서류의 열람 및 의견진술권)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심판청구인 또는 처분청(처분청의 경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로 한정한다)은 그 신청 또는 청구에 관계되는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3조(이의신청 등의 대리인) ①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과 처분청은 변호사, 세무사 또는 「세무사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된 공인회계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②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은 신청 또는 청구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그의 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③ 대리인의 권한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하며, 대리인을 해임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④ 대리인은 본인을 위하여 그 신청 또는 청구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그 신청 또는 청구의 취하는 특별한 위임을 받은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제93조의2(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①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이 조에서 "이의신청인등"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호사, 세무사 또는 「세무사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된 공인회계사를 대리인으로 선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1. 이의신청인등의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금액과 소유 재산의 가액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일 것
2. 이의신청인등이 법인이 아닐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액·상습 체납자 등이 아닐 것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청구 또는 신청일 것
5.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및 레저세가 아닌 세목에 대한 청구 또는 신청일 것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체 없이 대리인을 선정하고,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등과 대리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대리인의 권한에 관하여는 제93조제4항을 준용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대리인의 자격, 관리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0. 3. 2] [대통령령 제30317호, 2019. 12. 31, 일부개정]

제62조의2(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① 법 제93조의2제1항에 따라 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이 조에서 "이의신청인등"이라 한다)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이의신청인등이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의신청인등의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동의에 관한 사항
- ② 법 제93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종합소득금액의 경우: 5천만원(배우자의 종합소득금액을 포함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전에 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하는 경우 그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전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을 대상으로 하고, 그 신고기한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 그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을 대상으로 한다.
2. 소유 재산의 가액의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른 재산(배우자 소유 재산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평가 가액 합계액이 5억원. 다만,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 가. 「지방세법」 제6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
 - 나.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회원권
 - 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2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승용자동차

③ 법 제93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액·상습채납자 등"이란 「지방세징수법」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자를 말한다.

④ 법 제93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천만원을 말한다.

⑤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대리인을 선정하는 경우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유 재산의 평가 방법, 대리인의 임기·위촉, 대리인 선정을 위한 신청 방법·절차 등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법제처 자치법규의견제시 사례

안건번호	의견 18-0025	요청기관	경상남도	회신일자	2018. 3. 13.
<p>• 질의요지 「도로교통법」에 따른 주·정차 위반에 대한 의견진술 및 과태료 감면을 심의·결하기 위하여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자치법규로 정하려는 경우에 창원시의 조례로 정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규칙으로 정하여야 하는지?</p> <p>• 이유 「지방자치법」 제22조 본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여기서 “법령의 범위 안”이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를 의미하고(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추103 판결례 참조), “그 사무”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두12153 판결례 참조),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는 기관위임사무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위배된다고 할 것입니다.</p> <p>반면, 「지방자치법」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은 법령·조례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당연히 규정할 수 있지만, 위임이 없더라도 법령·조례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인 경우 자치사무·단체위임사무·기관위임사무 여부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상위법령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상급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규칙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p> <p>~이하 생략~</p>					

『국도24호선 거창 산포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

진주국토관리사무소에서 시행중인 『국도24호선 거창 산포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관계자, 이해관계가 있는 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분이나 단체 등은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2월 19일

거 창 군 수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로 개설(교차로 개선)
- 명 칭 : 국도24호선 거창 산포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

2. 사업시행자의 주소, 성명

- 주 소 : 경남 진주시 남강로 50(평거동 695-50)
- 성 명 : 진주국토관리사무소

3. 사업예정지 : 경남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1368-7번지 일원

4. 사업의 규모 : 위험도로 개선 L=1.2km

5. 사업의 목적 : 국도 위험도로 개선으로 도로이용자들의 안전 및 편의 제고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및 지장물 조서 : “별도첨부”

7. 열람기간 및 장소

- 장 소 : 거창군청 건설과(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3층)
- 기 간 : 2020. 2. 19. ~ 2020. 3. 6.

8. 주민의견 제출방법 : 열람장소에 비치된 양식에 따라 의견서 제출

9.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경제산업국 건설과(055-940-35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용 및 수용할 토지의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원래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비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1	남하면 무릉리	1368-7	도	27	24	국(건설부)		
2	남하면 무릉리	1361	유	22,631	10	국(건설부)		
3	남하면 무릉리	1367-1	도	40	36	국(건설부)		
4	남하면 무릉리	1548-1	구	787	34	국(농림수산부)		
5	남하면 무릉리	1358-3	유	2,218	321	국(건설부)		
6	남하면 무릉리	1358-5	도	399	399	국(건설부)		
7	남하면 무릉리	1358-1	도	100	100	국(건설부)		
8	남하면 무릉리	1358-6	도	115	115	국(건설부)		
9	남하면 무릉리	1358-4	도	80	80	국(건설부)		
10	남하면 무릉리	1351-3	구	234	215	국(농림수산부)		
11	남하면 무릉리	1350-4	도	526	526	국(건설부)		
12	남하면 무릉리	1350-1	유	15,351	829	국(건설부)		
13	남하면 무릉리	1351-4	구	58	58	국(농림수산부)		
14	남하면 무릉리	1351-5	구	554	89	국(농림수산부)		
15	남하면 무릉리	1357-22	도	125	55	국(건설부)		
16	남하면 무릉리	1422-4	도	1,955	1,917	국(건설부)		
17	남하면 무릉리	1422	유	10,052	1,140	국(건설부)		
18	남하면 무릉리	1520-4	구	463	294	국(농림수산부)		
19	남하면 무릉리	산269-5	유	228	181	국(건설부)		
20	남하면 무릉리	1444-1	유	141	141	국(건설부)		
21	남하면 무릉리	산269-1	임	40,390	2,456	동래정씨 강정사종중		
22	남하면 무릉리	산269-6	도	163	162	국(건설교통부)		
23	남하면 무릉리	1550-1	도	4,252	947	국(건설부)		
24	남하면 무릉리	1426-1	도	96	34	국(건설교통부)		
25	남하면 무릉리	1426-2	도	91	77	국(건설교통부)		

26	남하면 무릉리	산269-2	도	496	146	정운영		
27	남하면 무릉리	1427-11	도	76	72	국(건설부)		
28	남하면 무릉리	1427-15	도	179	71	국(건설부)		
29	남하면 무릉리	1459-2	유	396	223	국(건설부)		
30	남하면 무릉리	1459-1	도	6,365	2,401	국(건설부)		
31	남하면 무릉리	1549-1	도	1,983	812	국(건설부)		
32	남하면 무릉리	1355-1	도	183	22	국(건설부)		
33	남하면 무릉리	1357-19	도	201	3	국(환경부)		
34	남하면 무릉리	1357-1	도	5,776	3,088	국(건설부)		
35	남하면 무릉리	1421-2	도	85	85	국(건설부)		
36	남하면 무릉리	1421-1	도	41	41	국(건설부)		
37	남하면 무릉리	1422-3	도	208	208	국(건설부)		
38	남하면 무릉리	1422-2	도	132	132	국(건설부)		
39	남하면 무릉리	1423-5	도	72	72	국(건설부)		
40	남하면 무릉리	1423-3	도	17	17	국(건설부)		
41	남하면 무릉리	1423-6	도	67	67	국(건설부)		
42	남하면 무릉리	1423-4	도	19	19	국(건설부)		
43	남하면 무릉리	1424-1	도	140	54	국(건설부)		
44	남하면 무릉리	1424-2	도	309	236	국(건설부)		
45	남하면 무릉리	산269-7	도	66	66	국(건설부)		
46	남하면 무릉리	1444-3	도	73	2	국(건설부)		
47	남하면 무릉리	1444-7	유	725	583	국(건설부)		
48	남하면 무릉리	1444-6	도	193	4	국(건설부)		
49	남하면 무릉리	산269-3	도	776	7	국(건설부)		
50	남하면 무릉리	1426-7	도	28	25	국(건설교통부)		
51	남하면 무릉리	1426-6	도	288	103	국(건설부)		
52	남하면 무릉리	1461-1	도	221	51	국(농림수산부)		
53	남하면 무릉리	1418-6	구	8,174	290	국(농림수산부)		
54	남하면 무릉리	산261-2	도	1,080	21	국(건설부)		
					58	국(건설부)		

55	남하면 무릉리	1462-7	도	454	162	국(건설부)	
56	남하면 무릉리	1462-2	도	225	86	국(건설부)	
57	남하면 무릉리	산259-8	도	191	67	국(건설교통부)	
58	남하면 무릉리	산260-1	도	533	473	국(건설교통부)	
59	남하면 무릉리	산260	임	62	62	조영자	대구광역시달서구진천로3길 51,104동101호(진천동, 유성타운)
60	남하면 무릉리	513-5	전	101	99	국(국토교통부)	
61	남하면 무릉리	513-4	도	494	458	국(국토교통부)	
62	남하면 무릉리	513-2	도	294	153	국(건설부)	
63	남하면 무릉리	513-3	도	555	98	국(국토교통부)	
64	남하면 무릉리	512-3	도	93	31	국(건설부)	
65	남하면 무릉리	510-4	도	142	130	국(건설부)	
66	남하면 무릉리	1528-1	도	784	79	국(건설부)	
67	남하면 무릉리	519-7	도	75	56	국(국토교통부)	
68	남하면 무릉리	519-3	도	96	96	국(국토교통부)	
69	남하면 무릉리	519-6	도	69	54	국(국토교통부)	
70	남하면 무릉리	519-4	도	99	31	거창군	
71	남하면 무릉리	521-2	도	471	442	국(국토교통부)	
72	남하면 무릉리	568-11	도	77	68	국(국토교통부)	
73	남하면 무릉리	522-2	도	335	310	국(국토교통부)	
74	남하면 무릉리	568-5	답	1,780	14	박영자	부산광역시연제구거제동212-15 고려아파트505호
75	남하면 무릉리	568-12	도	157	154	국(국토교통부)	
76	남하면 무릉리	569-1	도	37	37	국(국토교통부)	
77	남하면 무릉리	570-1	도	57	60	국(국토교통부)	
78	남하면 무릉리	568-13	도	16	16	국(국토교통부)	
79	남하면 무릉리	568-4	도	26	5	국(건설부)	
80	남하면 무릉리	512-4	도	31	31	국(국토교통부)	
81	남하면 무릉리	512-2	도	73	73	국(건설부)	
82	남하면 무릉리	511-8	도	57	57	국(국토교통부)	
83	남하면 무릉리	511-3	도	198	186	국(건설부)	

84	남하면 무릉리	511-6	대	51	40	김용일	남하면 무릉리 512-2	
85	남하면 무릉리	511-2	전	332	63	김용일	남하면 무릉리 512-2	
86	남하면 무릉리	511-7	도	2	2	국(국토교통부)		
87	남하면 무릉리	511-5	도	13	13	국(건설부)		
88	남하면 무릉리	510-3	도	106	106	국(건설부)		
89	남하면 무릉리	510-2	전	33	33	김용문	남하면 무릉리 512	
90	남하면 무릉리	509-1	대	294	12	김용문	남하면 무릉리 512	
91	남하면 무릉리	509-4	대	13	7	전정권	남하면 영서로 256-3	
92	남하면 무릉리	508-1	도	13	6	국(건설부)		
93	남하면 무릉리	519-5	도	23	23	국(건설부)		
94	남하면 무릉리	520-4	도	89	89	국(건설부)		
95	남하면 무릉리	520-1	도	36	36	국(국토교통부)		
96	남하면 무릉리	520-3	도	3	3	국(건설부)		
97	남하면 무릉리	1528-3	도	4,773	2,431	국(건설부)		
98	남하면 무릉리	513	전	288	17	강병석	남하면 무릉리 545	
99	남하면 무릉리	512	대	5	5	마임이	남하면 무릉리 605	
100	남하면 무릉리	510-1	대	69	2	이홍식	남하면 무릉리 512	
101	남하면 무릉리	504-1	도	33	2	국(건설부)		
102	남하면 무릉리	522	답	329	2	김윤중	남하면 무릉리 548	
103	남하면 무릉리	498-2	도	570	358	국(건설부)		
104	남하면 무릉리	499-1	도	93	17	국(건설부)		
105	남하면 무릉리	521-1	도	83	83	국(건설부)		
106	남하면 무릉리	568-8	도	13	13	국(건설부)		
107	남하면 무릉리	522-1	도	13	13	국(건설부)		
108	남하면 무릉리	568-9	도	3	3	국(건설부)		
109	남하면 무릉리	568-2	도	66	66	국(국토교통부)		
110	남하면 무릉리	501-2	도	294	266	국(건설부)		
111	남하면 무릉리	501	답	1,251	364	윤재호 외 2인	거창군 남하면 대야리 1451	
112	남하면 무릉리	501-3	도	87	87	국(국토교통부)		
113	남하면 무릉리	500	도	20	20	국(건설부)		
114	남하면 무릉리	498	답	279	158	김용대	경기도 안산시 부곡동 643-2	
115	남하면 무릉리	498-3	도	62	59	국(국토교통부)		
116	남하면 무릉리	499	도	63	22	국(건설부)		

▷ 사용 및 수용할 물건의 소재지 및 종류 등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일련 번호	소재지	편입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및 단위		토지소유자		비고
					수량	단위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1	남하면 무릉리	513	복숭아나무	R=0.1~0.2 H=2	5	주	강병석	경남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545	
2	남하면 무릉리	511-6	매실나무	R=0.1~0.2 H=2	1	주	마임이	경남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605	
			대추나무	R=0.1~0.2 H=2	2	주			
			감나무	R=0.1~0.2 H=2	2	주			
3	남하면 무릉리	511-2	매실나무	R=0.1~0.2 H=2	1	주	마임이	경남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605	
			대추나무	R=0.1~0.2 H=2	4	주			
			감나무	R=0.1~0.2 H=2	5	주			
4	남하면 무릉리	513-3	비닐하우스	B=6.0 L=10.0	60	m ²	이홍식	경남 거창군 영서로 251번지	
5	남하면 무릉리	1456-2	칭송비		1	식	최용우	경남 거창군 남하면 산포2길 40번지	

▷ 사용 및 수용할 분묘의 소재지 및 종류 등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일련번호	소재지	편입지번	물건의종류	구조 및규격	수량 및단위		토지소유자		비고
					수량	단위	성명 또는명칭	주소	
1	남하면 무릉리	산269-1	상석	900×600	1	EA	동례정씨 강정사종중	경남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1177	관계인 정규천 (종중관리대표)
			향로석	150×150	1	EA			
2	남하면 무릉리	산269-1	상석	900×600	1	EA			
			향로석	150×150	1	EA			
3	남하면 무릉리	산269-1	상석	900×600	1	EA			
			향로석	150×150	1	EA			
			월석	B800× H600	1	EA			
			망주석	H=1200 둘레800	1	EA			
4	남하면 무릉리	산269-1	상석	900×600	1	EA			
			향로석	900×600	1	EA			

<붙임 : 의견서 >

『국도24호선 거창 산포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
사업인정 의견청취 공고에 따른 의견서

1.제 목	
2.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성 명(명칭) 주 소
3.의 견	
4.기 타	
<p>『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 합니다.</p> <p>2020. . . .</p> <p>의견 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p> <p>거 창 군 수 귀하</p>	
비 고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공인 등록 공고

「거창군 공인조례」 제6조에 따라 공인을 등록하고, 이에 관한 사항을 같은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2. 18.

거창군수

1. 등록사유 : 민원발급용 인증기 구입
2. 등록공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 2020. 2. 18.
3. 등록공인의 명칭 및 인영

공 인 명	규 격	인 영
민원사무전용 신원면장인	2.1cm×2.1cm	

4. 폐기공인의 명칭 및 인영

공 인 명	규 격	인 영
민원사무전용 신원면장인	2.1cm×2.1cm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9일

거창군수

1. 자치법규명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2. 개정 이유

- 상위법령의 위임범위를 일탈하는 불합리한 조례 정비를 통해 공유재산관리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신설하여 타시군 관련 조례와 균형을 맞추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상위 법령 위임사항 조례에 반영(안 제15조의 2)

- 영 제13조제3항제8호 및 제17조제6항, 제29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지역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경우” 수의계약으로 공유재산을 사용·대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 마련

나. 토석매각 대금 결정방법 및 불필요한 사항 개정(조례 제25조)

- 조례 제25조(토석채취료 등) 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단서에 따른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대부한 토지에서 생산되는 토석의 매각대금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중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 조례 제25조(토석채취료 등) 제2항은 삭제
- 조례 제25조(토석채취료 등) 제5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항에 따라 토석의 매각대금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제4항에 따른 채석 경제성에 관한 평가의 결과를 반영하여 석재량과 토사량을 구분하여 매각대금의 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할 수 있다.”

다. 상위법 근거 정비 및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개정사항 반영(조례 제26조)

- 조례 제26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제2항 정비
 - 부지면적 산출시 건폐율 역산 관련 근거 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를 “ 「건축법」 ”으로 개정
- 조례 제26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제3항 삭제
 - ‘건물의 사용·대부료 산출시 층별로 부지평가액에 감경비율 적용’ 삭제
- 조례 제26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제4항 정비
 - 서술식으로 되어있는 공용면적 산출방식을 수식화하여 별표1)로 신설
- 조례 제26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제6항 삭제
- 조례 제30조(대부료 감면) 제4항 정비
 -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 자에게 사용료 및 대부료를 감면하도록 하는 규정 정비

4. 예고기간 : 2020. 2. 19.(수) ~ 3. 10.(화)

5.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재무과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등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 주소 : (우 50132)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청(재무과)
 - 전화번호 : 055) 940-3262 / FAX : 055) 940-3219

6. 기 타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재무과 재산관리담당 **☎(055)940-326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 1부. 끝.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수의계약으로 사용·수익허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의2(수의계약으로 사용·수익허가 할 수 있는 경우)행정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의계약으로 사용·수익허가 할 수 있다.

1. 영 제13조제3항제8호에 따라 군수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 자에게 사용·수익 허가하는 경우
2. 영 제13조제3항제18호에 따라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구 또는 단체에 사용·수익허가하는 경우
 1.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국제기구
 2. 50개국 이상의 서로 다른 국가의 회원을 보유한 비영리 민간단체

제25조(토석채취료 등) 제1항, 제2항,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제24조제1항 단서에 따른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대부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토석의 매각대금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중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 ② 삭제한다.
- ⑤ 제1항에 따라 토석의 매각대금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제4항에 따른 채석 경제성에 관한 평가의 결과를 반영하여 석재량과 토사량을 구분하여 매각대금의 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할 수 있다.

제26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제2항, 제3항, 제4항,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른 건폐율을 역산하여”
를 “ 「건축법」 따른 건폐율을 역산하여” 로 한다.

③ 삭제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 결정에 있어 건물 및 부지의 대부면적은 대부를 받은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별표1과 같이 계산하여 적용한다.

⑥ 삭제한다

제30조(대부료의 감면)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영 제17조제6항 및 제29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 자에게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 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7항제2호 및 제35조제2항제2호에 따라 대부료 등을 다음 각 호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1. 대부료 등이 5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 : 100분의 20
2. 대부료 등이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 : 100분의 25
3. 대부료 등이 200만원 초과: 100분

「별표1」 “건물 및 부지의 공용면적 계산방법”을 신설하고, 기존 「별표1」 을 「별표2」 로, 「별표2」 는 「별표3」 으로, 「별표3」 은 「별표4」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의2(수의계약에 의한 사용·수익허가)	영 제13조제3항제18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구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국제기구 2. 50개국 이상의 서로 다른 국가의 회원을 보유한 비영리 민간단체	제15조의2(수의계약으로 사용·수익허가 할 수 있는 경우)	행정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의계약으로 사용·수익허가 할 수 있다. 1. 영 제13조제3항제8호에 따라 군수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특산물 또는 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 자에게 사용·수익허가하는 경우 2. 영 제13조제3항제18호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구 또는 단체에 사용·수익허가하는 경우 1.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국제기구 2. 50개국 이상의 서로 다른 국가의 회원을 보유한 비영리 민간단체	
제25조(토석 채취료 등) ①	제24조제1항 단서에 따른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대부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토석 채취료는 채취허가량에 세제곱미터당 그 연도의 토석시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천분의 50으로 한다. ② 제1항의 “토석시가”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중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말한다. ③ 삭제(2016.12.28.) ④ 삭제(2016.12.28.)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토석의 종류별·용도별 생산비 등을 고려하여 1천분의 50 이상으로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석에 대하여는 토석 채취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제24조제1항 단서에 따른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대부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토석의 매각대금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중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② 삭제 ③ 삭제(2016.12.28.) ④ 삭제(2016.12.28.) ⑤ 제1항에 따라 토석의 매각대금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산지관리법 시행 규칙」 제35조제4항에 따른 채석 경제성에 관한 평가의 결과를 반영하여 석재량과 토사량을 구분하여 매각대금의 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할 수 있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6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생략)</p> <p>② 제1항의 부지평가액은 건물의 바닥면적 외에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결정한다. 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른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을 산출하여 평가하여야 한다.</p> <p>③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 해당 재산 평정가격은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p> <p>1. 지상 1층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부지평가액 전액</p> <p>2. 지상 2층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p> <p style="padding-left: 20px;">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2</p> <p style="padding-left: 20px;">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p> <p>3. 지상 3층 이상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p> <p style="padding-left: 20px;">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p> <p style="padding-left: 20px;">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p> <p style="padding-left: 20px;">다. 3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p> <p style="padding-left: 20px;">라. 4층 이상은 부지평가액의 5분의 1</p> <p>4. 지상건물이 있는 지하층을 대부하는 경우</p> <p style="padding-left: 20px;">가. 지하 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p> <p style="padding-left: 20px;">나. 지하 2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p> <p style="padding-left: 20px;">다. 지하 3층 이하는 부지평가액의 5분의 1</p> <p>5. 지상건물이 없는 지하층을 대부하는 경우</p> <p style="padding-left: 20px;">가. 지하 1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p> <p style="padding-left: 20px;">나. 지하 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p> <p style="padding-left: 20px;">다. 지하 3층 이하는 부지평가액의 4분의 1</p>	<p>제26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 <u>「건축법」</u> ----- ----- -----</p> <p>③ 삭제</p>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을 결정할 경우에 건물 및 부지의 대부면적은 대부를 받은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이하 “공용면적”이라 한다)을 합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면적의 산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건물의 공용면적 산출 산식 <u>해당 건물의 (빌딩의 경우 해당층의) 총 공용면적 ×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u> / <u>해당 건물의(빌딩의 경우 해당층의) 총 전용면적</u></p> <p>○ 부지의 공용면적 산출 산식 <u>해당 부지 면적 ×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는 건물면적(전용·공용면적 합계)</u> / <u>해당 부지내 건물의 연면적</u></p> <p>2. 제1호에 따라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용면적의 30퍼센트를 적용</p>	<p>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 결정에 있어 건물 및 부지의 대부면적은 대부를 받은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별표1과 같이 계산하여 적용한다.</p>
<p>⑤ 생략</p>	<p>⑤ (현행과 같음)</p>
<p>⑥ <u>지상 2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에 있는 상업용 사유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대부료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하고, 주거용 사유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대부료는 총 대지면적을 사용면적(공용면적을 포함한다)으로 나눈 면적비율에 따라 산출한다.</u></p>	<p>⑥ 삭제</p>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0조(대부료의 감면) ① (생 략)	제30조(대부료의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삭제 (2016.12.28.)	② 삭제 (2016.12.28.)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영 제17조제6항 및 제35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감액은 지역특산품을 생산·전시·판매를 위한 경우로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④ 영 제17조제6항 및 제29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 자에게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 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7항제2호 및 제35조제2항제2호에 따라 대부료 등을 다음 각 호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1. 대부료가 5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 : 100분의 20	1. 대부료 <u>등이</u> 5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 : 100분의 20
2. 대부료가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 : 100분의 25	2. 대부료 <u>등이</u>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 : 100분의 25
3. 대부료가 200만원 초과 : 100분의 30	3. 대부료 <u>등이</u> 200만원 초과: 100분의 30
⑤~⑨ (생 략)	⑤~⑨ (현행과 같음)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1조(청사의 설계) ① 청사를 신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과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설계를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행정수요·기구·인력의 증감 등 장래수요를 감안한 적정 규모로 설계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의 전통미를 살린 외형설계 3. 증축이 가능하도록 수평·수직으로 설계 4. 층무시설 및 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 5. 냉·난방시설을 완비하여 설계 6. 경제성과 안정성을 겸비한 구조로 설계 7. 청사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을 설정 <p>② 별표 1에서 규정되지 않은 청사를 신축하는 경우 직무관련 1명당 면적기준 등에 대하여는 별표 1의 기준을 준용한다.</p> <p>③ 청사를 포함한 공용·공공용건물의 신축을 위하여 타당성 및 적정성 검토를 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고려하여야 한다.</p>	<p>제41조(청사의 설계) ① 청사를 신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과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설계를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행정수요·기구·인력의 증감 등 장래수요를 감안한 적정 규모로 설계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의 전통미를 살린 외형설계 3. 증축이 가능하도록 수평·수직으로 설계 4. 층무시설 및 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 5. 냉·난방시설을 완비하여 설계 6. 경제성과 안정성을 겸비한 구조로 설계 7. 청사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을 설정 <p>② 별표 2에서 규정되지 않은 청사를 신축하는 경우 직무관련 1명당 면적기준 등에 대하여는 별표 2의 기준을 준용한다.</p> <p>③ 청사를 포함한 공용·공공용건물의 신축을 위하여 타당성 및 적정성 검토를 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고려하여야 한다.</p>	<p>제55조(물품의 구분) ① (생략)</p> <p>② 제1항에 따른 물품의 품종·상태 구분은 별표 2, 정리구분은 별표 3과 같다.</p>	<p>제55조(물품의 구분) ① (현행과 같음)</p> <p>② 제1항에 따른 물품의 품종·상태 구분은 별표 3, 정리구분은 별표 4과 같다</p>	

[별표 1]

건물 및 부지의 공용면적 계산방법

가. 건물의 공용면적 계산방법

$$\text{해당 건물의 총 공용면적} \times \frac{\text{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text{해당 건물의 총 전용면적}}$$

나. 부지의 공용면적 계산방법

$$\text{해당 부지의 총 공용면적} \times \frac{\text{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는 건물면적(전용·공용면적 합계)}}{\text{해당 부지 내 건물의 연면적}}$$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사용·수익허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을 허가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0. 2. 4., 2014. 1. 7., 2015. 1. 20.>

1. 허가의 목적·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가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단서에 따른 사용·수익이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거나 행정재산의 원상(原狀) 회복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수익을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기간이 끝나거나 제25조에 따라 사용·수익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행정재산을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리 원상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8. 12. 26.]

제24조(사용료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2.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라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받아들인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3.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채납을 하려는 자가 신축기간에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그 재산을 일정 기간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복구 완료기간의 사용료와 그 이자를 일할계산하여 감경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8. 12. 26.]

제29조(계약의 방법) ① 일반재산을 대부하거나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뜻을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으며, 증권의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9항에 따른 증권매출의 방법으로 하며, 이 법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일반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76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0. 2. 4., 2015. 1. 20.>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증권을 매각하는 경우 가격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12. 26.]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사용·수익허가의 방법)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일반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이하 "지정정보처리장치"라 한다)를 이용하여 입찰공고 및 개찰·낙찰 선언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개정 2010. 8. 4.,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법 제20조제2항 본문에 따른 일반입찰 및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지명경쟁은 사용료 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1개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있는 경우에 최고가격으로 응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개정 2014. 7. 7., 2016. 7. 12.>

③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8. 4., 2013. 6. 21., 2014. 7. 7., 2015. 7. 20., 2016. 7. 12., 2018. 1. 9., 2018. 12. 4.>

1. 국가·지방자치단체·공법인·공익법인이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
2. 일단(一團)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농경지를 경작의 목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농업인(「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사용·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3. 청사(廳舍)의 구내재산을 공무원 후생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그 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4. 법률에 따라 해당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허가할 수 있는 자에게 그 재산을 유상으로 사용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5. 법 제24조제1항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면제의 대상이 되는 자에게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6. 사용·수익허가의 신청 당시 제31조제2항 각 호의 방법을 적용해서 산출한 가격(행정재산 중 일부를 사용·수익허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재산 전체의 가격을 말한다)이 1천만원(특별시·광역시의 자치구에 소재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인 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7. 2회에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8.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특산품 또는 해당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9.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이전하는 공익시설의 소유자가 그 공익시설과 직접 관련된 재산을 그 공익시설을 이전하는 기간 동안 사용하려는 경우
10.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하려는 자가 신축기간 동안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1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임시로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12. 공익사업을 위하여 자진철거를 전제로 하여 임시로 사용하는 경우
13.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재산을 우선 임대할 수 있는 자에게 그 재산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1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

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이하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이라 한다) 또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15. 지방자치단체와 재산을 공유하는 자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사용·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16. 지방자치단체의 현재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공유재산의 공중·지하에 건물이 아닌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17. 공유재산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및 제3조에 해당하는 창업자에게 창업을 위한 사무실 또는 사업장 등 창업 공간(창업보육센터는 제외하며, 이하 "창업공간"이라 한다)으로 사용·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1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구 또는 단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구 또는 단체가 사용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가. 국제기구(국제연합과 그 산하기구·전문기구, 정부 간 기구, 준정부 간 기구를 말한다)

나. 50개국 이상의 서로 다른 국가의 회원을 보유한 비영리민간단체

19.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의 자동차를 이용하여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사람에게 사용·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20.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사용·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2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한 일자리정책에 따라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가 창업을 위해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22.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는 다음 각 목의 기업 또는 조합이 사용·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

23. 제1호부터 제22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행정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성질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

④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지명경쟁으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신설 2014. 7. 7.>

1. 토지의 용도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재산에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칠 필요가 있는 경우

2. 제3항에 따른 사용·수익허가의 신청이 경합하는 경우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성질 등으로 보아 사용·수익허가를 받는 자를 지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제19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집 방법과 우선대상자 선정기준 등을 정하여 1명 이상에게 일수별 또는 시간별로 하나 이상의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6. 7. 12., 2018. 1. 9.>

[전문개정 2009. 4. 24.]

제17조(사용료 감면) ① 법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료 면제기간은 기부채납된 재산의 가액을 연간 사용료로 나눈 연수(年數)를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식재산(이하 "지식재산"이라 한다)의 사용료 면제기간은 20년으로 한다. <신설 2015. 7. 20.>

③ 건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을 기부채납한 경우에는 공유재산인 그 부지의 사용료를 제1항의 연간 사용료에 합산한다. 다만, 부지 사용료를 따로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7. 20.>

④ 기부채납된 재산의 가액과 제3항에 따라 연간 사용료에 합산할 부지 사용료를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부지의 가액은 최초의 사용·수익허가 당시를 기준으로 제31조를 준용하여 산출하며, 사용료는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5. 7. 20.>

⑤ 법 제24조제1항제4호에서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 7. 20., 2016. 7. 12.>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이전하는 공익시설의 소유자가 그 공익시설과 직접 관련된 재산을 그 공익시설을 이전하는 기간 동안 사용하려는 경우

2의2.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 사업을 위한 경우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4. 제13조제3항제8호 및 제14호에 해당하는 경우

⑥ 법 제24조제2항에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특산품 또는 해당 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 7. 7., 2015. 7. 20.>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0. 8. 4., 2015. 7. 20., 2018. 12. 4.>

1. 제13조제3항제21호 또는 제22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50 이내

2. 제1호 외의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30 이내

[전문개정 2009. 4. 24.]

제29조(일반재산의 대부계약 등) ①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일반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익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10. 8. 4., 2014. 7. 7., 2015. 2. 16., 2015. 7. 20., 2016. 7. 12., 2017. 7. 26., 2018. 1. 9., 2018. 12. 4., 2019. 7. 2.>

1. 국가·지방자치단체·공법인·공익법인이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
2. 일단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농경지를 경작의 목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농업인에게 대부하는 경우
3. 재산의 성질상 또는 사회정책상 일반입찰로 매각하기가 곤란한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4. 임야를 목축·광업·채석 등의 목적으로 대부하는 경우
5. 청사의 구내재산을 공무원의 후생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6. 법률에 따라 해당 재산을 양여하거나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는 자에게 그 재산을 유상으로 대부하는 경우
7. 삭제 <2016. 7. 12.>
8.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를 대부하는 경우
9.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건물이 없는 토지를 해당 토지와 이해관계가 있는 인접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대부하는 경우
10. 대부계약 신청 당시 제31조제2항 각 호의 방법을 적용해서 산출한 가격(일반재산 중 일부를 대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일반재산 전체의 가격을 말한다)이

3천만원(특별시·광역시·자치구에 소재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인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11. 2회에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12.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특산품 또는 해당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13.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수도권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을 이전하는 자에게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14.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이전하는 공익시설의 소유자가 그 공익시설과 직접 관련된 재산을 그 공익시설을 이전하는 기간 동안 사용하려는 경우

15.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하려는 자가 신축기간 동안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16.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임시로 대부하는 경우

17.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에 대부하는 경우

18. 공익사업을 위하여 자진철거를 전제로 임시로 사용하는 경우

19.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의 수가 10명 이상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이 경우 대부 대상자의 세부 선정기준, 선정절차와 방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가. 공장 또는 연구시설과 그 지원시설

나. 「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른 관광시설 또는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 따른 문화시설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일자리창출 효과가 크다고 판단하여 지정하는 시설

다.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20.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한 일자리정책에 따라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가 창업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대부하는 경우

21.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재산을 우선 임대할 수 있는 자에게 그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22.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사업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제한된 재산을 그 사업의 시행자에게 대부하는 경우

23. 정부출연연구기관등 또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를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2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및 제3조에 해당하는 창업자에게 공유재산을 창업공간으로 대부하는 경우

25.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는 제13조 제3항제22호 각 목의 기업 또는 조합에 대부하는 경우

② 제1항제3호에서 "재산의 성질상 또는 사회정책상 일반입찰로 매각하기가 곤란한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개정 2010. 8. 4.>

1. 사유 토지에 위치한 건물
2. 사유 건물이 있는 부지. 다만, 경계에 건축물(構築物)이 없는 것은 660제곱미터 이하의 것으로 한정한다.
3. 허가를 받아 설치한 공작물이 있는 재산
4. 공유재산의 지분
5. 재해복구용 또는 그 밖의 구호사업용으로 시설한 재산
6. 법률이나 법원의 판결로 매각대상자가 특정되어 있는 재산

③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일반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명경쟁으로 대부할 수 있다. <신설 2014. 7. 7., 2016. 7. 12.>

1. 토지의 용도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재산에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칠 필요가 있는 경우
2. 제1항에 따른 대부신청이 경합하는 경우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성질 등으로 보아 대부를 받는 자를 지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④ 일반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14. 7. 7.>

1.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이전하는 공익시설의 소유자가 그 공익시설과 직접 관련된 재산을 그 공익시설을 이전하는 기간 동안 사용하려는 경우
2.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하려는 자가 신축 기간 동안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조건을 붙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3호와 제3항제1호에 따른 대부의 경우에는 제3호의 조건을 추가하여 붙일 수 있다. <개정 2014. 7. 7.>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대부재산의 반환을 요구할 때에는 즉시 반환할 것
2. 대부 계약일부터 1년 이내에 대부 목적사업을 시작하여야 하며, 대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매수를 요구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구하는 가격으로 매수할 것

⑥ 제1항에 따라 대부할 때에는 대부료의 예정가격을 미리 공개하여야 하며, 일반입찰로 대부할 때에는 그 공개한 대부료의 예정가격 미만으로 응찰한 입찰서는 무효로 한다. <개정 2010. 8. 4., 2014. 7. 7.>

⑦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대부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자에게는 해제 또는 해지된 날부터 3년간 해당 재산을 대부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4. 7. 7.>

⑧ 국제경기장 등 체육시설, 국제회의장 등 회의시설, 국제전시장 등 전시장, 그 밖의 공공시설로서 그 용도가 일부 폐지된 경우에 그 용도 폐지된 부분을 장기간 안정적으로 대부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상으로 일반입찰한 자 중에서 높은 가격으로 일반입찰한 자의 순서로 계약 이행능력, 대부료 납부 가능성 및 사업 수행능력 등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 8. 4., 2014. 7. 7., 2015. 7. 20.>

[전문개정 2009. 4. 24.]

제31조(대부료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일반재산의 대부료는 시가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월할 또는 일할로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부료를 계산할 때 해당 재산의 가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출한다. 이 경우 제1호 본문, 제2호 및 제3호 본문에 따른 재산가격은 대부기간 동안 연도마다 결정하고, 제1호 단서 및 제3호 단서에 따른 재산가격은 감정평가일부부터 3년 이내에만 적용할 수 있으며, 첫째 연도에는 측량 또는 감정평가 등에 든 비용을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3. 6. 21., 2015. 2. 16., 2016. 7. 12., 2016. 8. 31., 2018. 12. 4.>

1. 토지: 대부료 산출을 위한 재산가격 결정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말하며,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면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를 적용한다. 다만, 하나의 필지로서 그 필지의 주된 용도와 다른 용도로 이용되는 일부분의 토지이거나 위치에 따라 지가(地價)를 달리 적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토지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 이상의 금액으로 한다.

2. 주택: 대부료 산출을 위한 재산가격 결정 당시의 주택가격으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가격으로 한다.

가. 단독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개별주택가격

나. 공동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공동주택가격

다.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가표준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재산: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다만, 해당 시가표준액이 없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액을 적용한다.

③ 입찰로 대부하는 경우 첫째 연도의 대부료는 최고입찰가로 결정하고, 2차 연도 이후의 기간(대부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 대부계약기간 중으로 한정한다)의 대부료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3. 6. 21.>

$$[(\text{입찰로 결정된 첫째 연도의 대부료}) \times (\text{제2항에 따라 산출한 해당 연도의 재산가격}) \div (\text{제2항에 따라 산출한 입찰 당시의 재산가격})]$$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및 재산조성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재산에 대한 전세금을 받는 것으로 공유재산을 대부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할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수·시간 또는 횟수별로 해당 재산을 대부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재산을 대부한 일수·시간 또는 횟수별로 그 사용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⑥ 공유재산인 토지의 공중과 지하 부분을 사실상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공간에 대한 대부료는 해당 토지의 가격에 그 공간을 사용함으로써 인하여 토지의 이용이 저해되는 정도에 따른 적정한 비율(이하 이 항에서 "입체이용 저해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공유재산인 토지의 지하 또는 지상 공간을 일정 기간 사용하는 경우 그 공간에 대한 대부료는 제1항에 따라 산출된 대부료에 입체이용 저해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⑦ 경작용으로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료는 제1항에 따라 산출한 대부료와 「통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발표하는 농가경제조사통계의 해당 시·도 농가별 단위면적당 농작물수입(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충청남도, 광주광역시·전라남도, 대구광역시·경상북도,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경상남도의 통계를 각각 적용한다)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 6. 21., 2018. 12. 4.>

⑧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및 제3조에 해당하는 창업자에게 공유재산을 창업공간으로 대부하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산출한 대부료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대부료의 최고한도로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4. 24.]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8조(사용료 등 부과·징수) ① 공유재산의 사용료 및 대부료 부과·징수를 하는 경우 <별표 3>의 내용을 참고한다.

[별표 3]

사용료, 대부료 등의 부과·징수 기준 (제8조 관련)

1. 사용·대부료 산정방법

가. 건물 전체를 사용·대부하는 경우에는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을 합산한 금액을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

나. 건물의 일부를 사용·대부하는 경우에는 건물과 토지의 전용면적에 공용면적을 합하여 산출한다.

다. 토지·건물 공용면적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따른다.

1) 건물의 공용면적 산출 산식

$$\text{해당건물의 총 공용면적} \times \frac{\text{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 받은 자의 건물 전용면적}}{\text{해당 건물의 총 전용면적}}$$

2) 부지의 공용면적 산출 산식

$$\text{해당부지의 총 공용면적} \times \frac{\text{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 받은 자의 건물면적(전용·공용면적 합계)}}{\text{해당 부지 내 건물의 연면적}}$$

※ 사용·대부 받은 자의 부지전용면적은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부지를 말하고, 해당 부지의 총 공용면적은 특정인이 사용하는 부지전용면적을 제외한 건물을 사용하는 자들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부지면적을 말함.

(특정인이 사용하는 부지전용면적이 없는 경우 부지공용면적은 해당 토지 전체 면적이 됨)

※ 건물의 부지면적 산출이 곤란한 경우 「건축법」에 따른 건폐율을 역산(건물바닥면적 ÷ 건폐율)하여 부지면적 산출 가능

예시) 부지가 넓은 공원의 매점 등

라. 공유재산의 옥상을 사용·대부하는 경우*에 있어 재산평가액은 부지를 기준으로 총 효

용 및 용도를 고려하여 아래 산식에 따라 산정(건물평가액은 없는 것으로 봄)한 금액 이상으로 한다.

*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등의 경우가 해당되며, 통신중계기 등은 감정평가를 통해 산출 가능

※ 토지의 주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않는 주차장 지붕 형태의 태양광발전시설 등의 경우도 적용가능

1) 재산평가액 = 공시지가(원/㎡) × 건축부지면적(㎡) × 옥상지수

※ 건축부지면적은 실제 사용하는 건물의 수평투영면적을 적용

2) 옥상지수 : 건물의 층 효용 및 용도를 반영하여 아래 산식에 따라 산정

옥상(층효용비 × 용도비 × 사용허가면적)

최상층
∑
최하층

건물(층연면적 × 층효용비 × 용도비) + 옥상(층효용비 × 용도비 × 사용허가면적)

- ① 층별 효용비 : 행정안전부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정기준」 별표4 지수 적용
 ※ 옥상의 층 효용비는 최상층 지수 적용(예: 3층 건물은 3층 효용비 적용)
- ② 용도비 : 옥상은 30%를 적용
- ③ 사용허가 면적 : 사업허가를 득한 면적을 말함

층효용비

층 효용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의 용도지역을 기준으로 아래 기준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층	도시지역 (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5층 이상	35		
4층	40	42	80
3층	50	45	100
2층	60	60	100
1층	100	100	100
지하 1층	44	44	48
지하 2층 이상	38	40	

*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정기준」 상의 구분지상권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출요령 <별표4>

용도비

용도비는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매년 제공하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준용하여 적용하되 옥상은 30을 적용한다.

구 분	주용도 (교육시설, 주거 등)	부속용도 (기계실, 창고, 주차장)	옥 상
용도비	100	60	30

2. 납입고지

- 가. 사용료·대부료는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를 시작하기 전에 선납하여야 함
- 나. 변상금은 납부통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매각대금·교환차금은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함
- 다. 변상금 부과대상 재산을 사용·대부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변상금 완납(분납)을 조건으로 사용·대부 가능함
- 라. 매각대금, 교환차금은 60일 이내에서 계약금·중도금·잔금으로 구분하여 납부케 할 수 있음. 이 경우 중도금·잔금에 대한 이자는 발생하지 않으며, 납부기한을 초과하는 경우만 연체이자를 부과함

3. 선하지 대부료 산정

가. 산정기준

- 1) 토지의 공중과 지하부분을 사실상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토지의 가격에 당해 공간을 사용함으로 인하여 토지의 이용이 저해되는 정도에 따른 적정한 비율(입체이용저해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 2) 토지의 지하 또는 지상공간을 일정한 기간 동안 사용하는 경우 시가를 반영하여 산출된 대부료에 입체이용저해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나. 입체이용저해율 산정방법

- 1) 입체이용저해율 산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토지보상평가지침」에 따라 산정하되 평균치를 적용하여 아래 표의 '공중·지하 저해율'을 적용할 수 있음

$$\text{대부료} = \text{토지대부료}(\text{선하지 면적} \times \text{개별공시지가} \times \text{대부기간} \times \text{대부요율}) \\ \times \text{입체이용저해율(기본율)}$$

- 2) 입체이용저해율 산정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토지보상평가지침」 상의 '입체이용저해율 적용표'에 따라 산정

[표] 공중·지하 입체이용저해율

구 분	고층시가지	중층시가지	저층시가지	주택지	농지,임지
기타이용률	5%	15%	15%	15%	10%
상하배분비율	1:1~2:1	1:1~3:1	1:1~3:1	1:1~3:1	1:1~4:1
공중부분					
최 고 비	0.5	0.5	0.5	0.5	0.5
최 저 비	0.67	0.75	0.75	0.75	0.8
평 균 비	0.58	0.63	0.63	0.63	0.65
공중저해율	2.9%	9.4%	9.4%	9.4%	6.5%
지하저해율	2.1%	5.6%	5.6%	5.6%	3.5%

□ 산지관리법

제35조(국유림의 산지 내의 토석의 매각 등) ① 산림청장은 국유림의 산지에 있는 토석을 직권으로 또는 신청을 받아 매각하거나 무상양여할 수 있다. 다만, 무상양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8. 3. 13.>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가 있는 경우에 그 재해를 복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고 그 요청이 타당하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가. 「도로법」,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 도로 또는 철도를 설치·개량하거나 전원개발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채취한 토석을 그 공사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나. 광산개발에 따른 광해(鑛害)를 예방하거나 복구하기 위하여 광물의 생산과정에서 채취한 토석을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

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 등이 공용·공공용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채취한 토석을 그 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② 산림청장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신청을 받아 토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12. 2. 22.>

③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국유림의 산지에 있는 토석의 매입

을 신청하거나 무상양여를 받으려는 자는 제26조에 따라 채석 경제성에 관한 평가를 받아 그 결과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2.>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광업법」에 따른 채굴계획의 인가를 받은 자가 국유림의 산지에서 채굴한 광물의 분쇄·제련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한 토석을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으로부터 토석을 매입하거나 무상양여를 받지 아니하고 그 토석을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다. <개정 2010. 1. 27.>

⑤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국유림의 산지에 있는 토석을 매각하려는 경우 그 매각기준에 관하여는 제28조제1항 및 제2항을, 국유림의 산지에서의 자연석 채취에 관하여는 같은 조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2. 2. 22.>

⑥ 제1항에 따른 토석의 매각 또는 무상양여의 기간, 매입하거나 무상양여받은 토석의 반출, 매각계약의 방법, 매각대금의 결정, 매각대금의 납부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0. 5. 31.]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토석의 매각계약 등) ①지방산림청장·국유림관리소장·국립수목원장·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토석을 매각할 때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토석매각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4. 1. 13., 2006. 1. 26., 2007. 7. 27., 2009. 4. 20., 2011. 1. 5.>

② 토석의 매각대금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중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매각대금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산림청 소관 국유림을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나온 5만세제곱미터 미만의 토석(해당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허가지역에서 반출하기 위해 누적된 토석채취량을 말한다)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1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매각대금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1. 1. 5., 2012. 10. 26., 2016. 12. 30., 2019. 12. 31.>

③ 제2항의 경우 매각대금의 결정을 위한 감정평가의 유효기간 및 재평가에

관하여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9. 12. 31.>

④ 제2항에 따라 토석의 매각대금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채석 경제성에 관한 평가의 결과를 반영하여 석재량과 토사량을 구분하여 매각대금의 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할 수 있다. <신설 2016. 12. 30., 2019. 12. 31.>

⑤토석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7. 27., 2009. 11. 27., 2019. 12. 31.>

1. 500만원 미만 : 납부통지일부터 10일 이내
2. 500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 : 납부통지일부터 15일 이내
3. 1천만원 이상 : 납부통지일부터 20일 이내

⑥제1항에 따라 토석을 매입하거나 무상양여를 받은 자가 토석을 채취한 때에는 법 제35조제6항에 따라 별지 제32호서식의 토석매각계약서에 기재된 반출기간 이내에 국유림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산림청장·국유림관리소장·국립수목원장·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반출기간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4. 1. 13., 2006. 1. 26., 2007. 7. 27., 2009. 4. 20., 2009. 11. 27., 2011. 1. 5., 2019. 12. 31.>

⑦제6항 단서에 따라 반출기간의 연장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토석반출기간연장신청서를 지방산림청장·국유림관리소장·국립수목원장·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 1. 13., 2006. 1. 26., 2007. 7. 27., 2009. 4. 20., 2009. 11. 27., 2011. 1. 5., 2019. 12. 31.>

[제목개정 2007. 7. 27.]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9일

거창군수

1. 자치법규명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2. 개정 이유

- 상위법령 근거규정에 불일치하는 시행규칙을 정비하여, 공유재산 관리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규칙 제15조(기부채납) 제1항 정비

“영 제5조 제2항에 따라”를 “영 제5조 제1항에 따라”로 시행령에 일치하도록 다음과 같이 정비한다.

- “① 영 제5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하려는 자가 있으면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미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4. 예고기간 : 2020. 2. 19.(수) ~ 3. 10.(화)

5.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재무과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등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 주소 : (우 50132)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청(재무과)

– 전화번호 : 055) 940-3262 / FAX : 055) 940-3219

6. 기 타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재무과 재산관리담당 **☎(055)940-326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1부. 끝.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거창군 공유재산 물품 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영 제5조제2항”을 “영 제5조제1항” 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15조(기부채납) ① 영 제5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하려는 자가 있으면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미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물건의 표시 2. 기부자의 주소·성명 3. 기부의 목적 4. 재산의 현황 5. 등기부등본 또는 설계서 6. 사용계획 <p>② (생략)</p>	<p>제15조(기부채납) ① 영 제5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하려는 자가 있으면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미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물건의 표시 2. 기부자의 주소·성명 3. 기부의 목적 4. 재산의 현황 5. 등기부등본 또는 설계서 6. 사용계획 <p>② (현행과 같음)</p>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조(기부채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기부(寄附)를 받아들일 때에는 기부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명하게 적은 기부서와 권리 확보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재산의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또는 토지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나 임야도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7.>

1. 기부할 물건의 표시
2. 기부자의 명칭,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3. 기부의 목적
4. 기부할 물건의 가격
5. 기부할 물건의 도면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표자가 기부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각 기부자의 성명·주소 및 기부 재산 등을 적은 명세서를 제1항의 기부서에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③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 법 제2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 허가를 받은 기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전대차(轉貸借)사업계획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9.>

1. 전대(轉貸)하려는 재산의 표시

2. 전대하려는 재산의 사용목적, 수익방법 및 사용·수익기간

3. 해당 재산을 전대받아 사용·수익하려는 자의 성명 및 주소

④ 법 제7조제2항 본문에서 "기부하려는 재산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아니하는 것인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무상 사용·수익허가기간이 지난 후에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기 곤란한 경우

2. 재산 가액(價額) 대비 유지·보수비용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

3. 무상 사용·수익허가기간이 20년을 초과하는 경우

4. 그 밖에 지방재정에 이익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⑤ 기부를 조건으로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수익허가를 하기 전에 기부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행각서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4. 7. 7.>

[전문개정 2009. 4. 24.]

거창군 공고 제2020-300호

「2020년 친환경 쌀 학교급식 지원사업」 친환경 쌀 공급업체 선정 공모

친환경 쌀 학교급식으로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 증진 및 식생활 개선에 기여하기 위한 「2020년 친환경 쌀 학교급식 지원사업」 친환경 쌀 공급업체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모집내용

- 사업명 : 「2020년 친환경 쌀 학교급식 지원사업」 친환경 쌀 공급업체 선정
- 신청자격 : 경상남도 친환경 쌀 취급자 인증업체

2. 신청기간 및 접수처

- 공모접수 : 2020. 2. 19. ~ 2. 26. 18:00까지
- 접수처 : 거창군농업기술센터 행복농촌과 지역식품담당
- 신청양식
 - 친환경 쌀 학교급식 공급 참가 신청서
 - 생산단체 소개서
 - 친환경 쌀 생산비 산출내역
 - 친환경 쌀 및 찹쌀 품목별 제안가격
 - 최근 1년간 학교급식 공급실적
 - 차량현황
 - 서약서

- 신청분야 : 2020년 친환경 쌀 학교급식 지원사업」 친환경 쌀 공급업체 선정

3. 공모절차

- 가. 1차 서류심사
- 나. 2차 현장심사
- 다.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선정

4. 기타 자세한 절차는 거창군농업기술센터 행복농촌과 지역식품담당(전화 940-8292) 로 문의 바랍니다.

[서식1]

친환경 쌀 학교급식 공급 참가 신청서

생산단체명 (대표자)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담당자 (휴대전화/E-mail)		
소재지(주소)				
인증번호	인증 기관		인증일자	
쌀의 품종		쌀의 등급	() 등급 / 미검사	
보관방법	예) 톤백 보관, 싸이로 등	단백질함양	수(낮음)·우(중간)·미(높음)/미검사	
생산농법	구체적으로 작성			
생산 및 공급	친환경 참여 농민 수	() 작목반 / () 명		
	친환경 쌀 재배면적	㎡(2019년 기준)		
	총 쌀 생산량	약	톤(연간)	
	학교급식 공급가능량	약	톤(연간)	
	학교납품실적(2019.1.~2019.12.)	00지역	개교,	톤
		00지역	개교,	톤
납품가격	친환경 쌀 (10 Kg 기준)	원		
기 타	배송방법	· 직영()		
	차량보유현황	· 직영 (자차 : 대, 임차 : 대, 지입 : 대)		
	하자발생 시 조치계획			
	기타 홍보사항			

상기 단체는 거창군 친환경 쌀 학교급식 공급에 참여하고자 공고 내용을 확인·숙지하고, 신청서 기재사항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하며 제출서류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2020. . .

단 체 명 :

대 표 자 : (성명) (인)

대리신청자 : (직위) (성명) (인)

※ 대리신청의 경우 대표자 성명 및 인감날인

거창군수 귀하

생산 단체 소개서

참가분야	친환경 쌀 학교급식	상 호 명 (브랜드명)	
대 표 자		사무실전화	
담당자 성명	직위	핸드폰번호	

1. 단체 연혁(별지서식 가능)

- 설립년도 : (친환경농업을 시작한 년도 :)
- 참가동기 :
- 연혁

2. 일반 쌀과 친환경 쌀 구분 관리방법

- 보관방법 :
- 도정시설 : (예, 친환경만 전문 / 친환경쌀 및 일반쌀 도정라인 별도 / 일반쌀 혼용)
- 포장시설 : (예, 친환경만 전문 / 친환경쌀 및 일반쌀 포장라인 별도 / 일반쌀 혼용)
- 완제품 보관방법 :

3.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 주기 (예, 수매전, 수매후, 수매시, 출하시로 구분)

4. 도정시기 (예, 매주 수요일 도정 목요일 배송)

5. 유통체계(산지 →학교공급 자세히)

거창군수 귀하

<시설현황 사진>

도정공장 전경	보관시설
도정시설	포장시설
완제품 보관시설	친환경 쌀 스티커(샘플부착)

친환경 쌀 생산비 산출내역

(무농약 기준)

단체명(생산지역)		비고
수매가(40kg 조곡기준)		
수매비용		
도정수율(%)		
제품원가(10kg)		
금융수수료		10kg기준
창고보관료		10kg기준
원료 상·하차 운송료		10kg기준
감모 손실비		10kg기준
도정·가공비		10kg기준
포장작업비·인건비		10kg기준
포장지(재)		10kg기준
스티커		10kg기준
운송비(물류)		10kg기준
기타 제반비		10kg기준
이윤(마진율)		10kg기준
자치단체 지원금		10kg기준
부산물		10kg기준
공급희망가		

[서식4]

친환경 쌀 및 찰쌀 품목별 제안가격

□ 생산단체명 : _____

(2020. 1 ~ 2020. 12)

연 번	품목(1Kg)	제안가격(원)			비고
		유기농	무농약	국내산	
1	백 미				
2	칠 분 도 미				
3	현 미				
4	찰 쌀				
5	현 미 찰 쌀				

[서식5]

최근 1년간 학교급식 공급 실적

(기간 : 2019. 1. 1. ~ 2019. 12. 31.)

연번	납품기간	소재지	학교명	납품실적		납품학교 연락처
				공급량(Kg)	납품금액(원)	
1						
2						
3						
4						
5						
6						
7						
8						
9						
·	·	·				·
·	·	·				·
·	·	·				·
·	·	·				·
·	·	·				·
·	·	·				·
총 계			()개교	Kg	천원	

※ 학교급식 공급 실적 확인서 별첨
위 단체는 상기와 같이 학교에 급식 식재료를 공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0년 월 일

단체명 :

대표자 :

(인)

거창군수 귀하

[서식6]

차 량 현 황

연번	구분	차량번호	차종	보험가입기간	검사유효기간	소 유 주
1	자차/ 임차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서 약 서

본 단체는 거창군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친환경 쌀 공급단체 모집 공고와 관련하여 본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하고, 서면 내용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만일 관련서류가 위·변조된 경우 이번 공급단체 선정이 제한되고, 추천업체로 지정되었더라도 공급약정 물량 불이행 시 공급단체 선정취소 및 협약해지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0. . .

서약인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거창군수 귀하